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5. 14.(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5. 1.
- 회부일 : 2019. 5. 3. (의안번호 : 19 - 44)

2. 제안이유

-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 및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 구민에 대한 용어 정의
- 가입대상(안 제3조)
 - 가입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규정
-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안 제4조~안 제5조)
 - 예산범위 내 보험의 종류,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

- 구민안전보험 운영(안 제6조~안 제9조)
 -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에 따른 조사협조에 관한 사항
 - 보상금액은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에 따른다는 규정
 - 보험금 청구 대상자 및 구비서류 관련 사항
 -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
- 보상제외(안 제10조) :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
- 시행규칙(안 제11조) :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발생 시 구민의 생활안정 및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배경>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에 마포구에서 발생한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한 구민은 13명에 이르며, 부상자는 1,715명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마포구 관내 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2018년 말 기준)

[단위 : 명]

계		화재		교통사고		강도 등		스쿨존 사고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3	1,715	2	4	11	1,703	-	6	-	2

-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7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1,500만원 규모의 구민안전보험을 직접 가입해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에 발맞춰 마포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안전보험 조례 제정 및 가입 현황(2018년 말 기준)

[단위 : 명]

조례제정	입법예고	안전보험 가입현황			
		계	서울	조례 입법 예고	광역시,기초
99	18	74	서대문, 성동, 동대문, 강동	마포, 은평, 송파	70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
-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산정,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을 내용을 명시함.
- 안 제10조에서는 보상 제외 사항을 명시함.

○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됨.

○ 검토의견으로는

강원도 고성산불, 포항지진, 각종 교통사고, 조현병 증가로 인한 묻지마 폭행 등 각종 재난은 우리 주변에서 예고 없이 찾아와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구민을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함.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과 별도로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구민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해 줄 수 있어 주민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다만, 보험회사와 계약 시 최근 조현병 증가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범죄상해특약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 등을 검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받을 수 있는 보험보장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보험료 산출 및 보장내용> 9개 항목

• 보험료 : 약80,500천원

• 구민 1인당 약208원 × 386,359명 × 1년 = 80,362,672원

※ 2018. 12. 31기준인구 : 386,359명(등록외국인 11,282명 포함)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로 인한 피해	사망	강도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강도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 1급~5급)	1,500만원
의사상자상해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타 지자체 구민안전보험 도입현황

지자체명	인구수	보장담보	보험료	보장금액	도입년도
서대문구	310,800명	8개 항목	51,282천원	1,000만원	2019. 4
성동구	320,377명	11개 항목	86,643천원	1,000만원	2019. 1
강동구	428,531명	8개 항목	58,677천원	1,000만원	2019. 1
울산 중구	223,271명	11개 항목	127,962천원	1,500만원	2019. 1
충북 단양군	30,357명	14개 항목	32,922천원	1,500만원	2018. 4.
용인시	1,004,081명	8개 항목	255,865천원	1,000만원	2018. 3.